

양형위원회 제11차 회의 결과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I. 회의 개요

- 일시 : 2008. 10. 10. 14:00 ~ 15:3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참석 : 위원장 및 상임위원 포함 위원 9명
전문위원 3명, 운영지원단장

II. 주요 안건

1. 의결안건

- 공청회 개최계획 의결

2. 보고안건

- 전문위원 업무보고
 - 전문위원 제11차 및 임시 2, 3차 전체회의 결과 보고
- 운영지원단 업무보고(단장)
 - 단일범 양형자료조사 분석 보고
 - 전문위원 업무 지원

III. 논의결과

1. 공청회 개최 계획

- 원안대로 의결
- 위원회에서의 심사를 거쳐 공청회 대상으로 확정된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공청회 실시

- 양형기준 초안은 먼저 소위원회 심의에 회부하고, 소위원회는 최종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2. 주요 토의 내용

가. 기준 설정 대상범죄

- 의결 내용대로 대상 범죄유형 내의 모든 구성요건에 대하여 양형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모든 구성요건에 대하여 기준을 설정하기로 의결된 바가 없으며, 기본적 구성요건과 빈도수가 높은 개별범죄를 대상으로 양형기준을 우선 설정한 다음 점진적으로 대상범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나. 개별 구성요건의 처리방식

- 존속살인과 같은 특별구성요건에 대하여는 입법자의 의도를 존중하여 항상 별도의 양형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존속살인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피해자가 부(父)인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장기적인 가정폭력의 가해자인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모(母)인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정신장애자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바, 개별 구성요건에 대해 일률적으로 별도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됨

다. 법정형 하한과 형량범위

- 법정형 하한이 규정된 범죄의 경우 입법자의 의도를 존중하여 그 하한이 기본 형량범위의 하한이 되도록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① 과거 5·16, 5·17, 범죄와의 전쟁 등을 거치면서 정치적 결단에 의한 각종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정형 하한이 지나치게 가중되어 온 측면이 있으므로 실무양형과의 괴리가 있음에도 법정형 하한을 기본형으로 설정하면 많은 문제가 야기되며, 오히려 특별법에 대한 정비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② 법정형 하한이 기본형량의 하한이 되도록 설정할 경우 법률상 감경 또는 작량감경의 여지가 없어지므로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라. 선고유예

- 검찰의 기소유예 활용실태와 비교할 때 법원은 선고유예를 지나치게 예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바, 단기형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고유예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IV. 제12차 회의 일정(안)

- 일시 : 추후 지정
- 장소 : 대법원 제1601호 회의실
- 안건 : 양형기준안 초안 2차 심의(의결안건)